보험금 청구서 (개인·단체 공통)





| ※ 보험회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금 청구서와 청구서류상의 '개인(신용)정보'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|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인적사항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성 명 | | | | 주 | 민등록번호 | | | | _ | | | |
| 직장명 | 하시는 일 | | | | | | | | | | | |
| 수익자 정보 (예금주/안내대상자) 및 안내 방법 선택 (수익자=피보험자인 경우 성명,주민번호는 '상동'으로 작성가능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u> </u> | | _ " " " | 17 22 | | 주민등록번호 | | - 12 01 | - | _ | 피보험자 괸 | | |
| 안내받으실 | | | | @ | | | | | | | | |
| e-mail | 1 | 본인이 계약자 | | | | | | | =1 0145 | | ㅁ 동 | ·의함 |
| ★연락받으실 휴대전화 | _ | (모염계약종합 | 안내성 언 | | ^{설계약인대성 (} ★ 자택전화 | 로기 외, 먼 | 엑모엄사산군공 | 용보고서 분기 1 | 의 이성. 장전화 | | | |
| ★주소(우편수령지) | | | | | | | | ' | <u> </u> | | | |
| 진행단계 문자 안내 | | ㅁ 신청 ㅁ ㅁ | II신청 | 지급지인 | 면 전화 안내 | ㅁ 신청 | 성 D 미신청 | 지급내역 | 안내 | □ e-mail □ | 우편 | □ 전화 |
| ※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금융 | 감독원 | 모범규준에 따라 | e-mail,또는: | | 연안내장 이발성 | 응됩니다.※ 자든 | 내역안내는 전화 | 의경우라도 연결0 | 되지않을 | 시 e-mail또는 우편으 | 로앤내해 | 드립니다. |
| 입금받으실 계좌 | • | 은행명 : | | ● 예금주 | ·: | 계좌¹ | 번호 : | | | | | |
| ★개인고객 수익자의 실제소유자여부 | 1 | 예 ㅁ 아니. 실제소유자란? | | | | | | 실명번 <u>:</u> 산적으로 개인 고 | | 우 수익자와 동일히 | 국적: 하다고 추 | 정합니다. |
| ★신원확인증 (수익자) 신분증첨부시생략가능 | □ 주민등록증 ● 주민증발급일 : 년 월 일 ● 발급기관명 : □ 기타확인증 : □ 운전면허증 ● 운전면허번호 : ● 일련번호 : ※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 정부기관이 발행한 신원확인증이 없는 경우, 친권자(후견인)의 신원확인증정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고분할 보험금 수령방법 | 현금 □ 일시금 ※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. □ 부항(매년/매원) ▶ □ 사기 등로 계좌로 자동소그 시처하니다. 스이자(시처이) (이) | | | | | | | <u>PI</u>) | | | | |
| | | 계약번 | 호 | <u>ح</u> | 낭품명 | | 급부명 | 보험금(미 | (회) | 생존확인필요 | 보증 | 지급횟수 |
| [간병자금, 생활자금 등 특정상품급부에한함] | | | | | | | | | | 유 / 무 | | 회 |
| 100001111201 | | ※ 생존확인 표 | 필요시 보증 | 등지급분에 한 | 하여 신청가능 | 하며, 향후 | 수익자 변경 및 | 및 보험금 압류· | 양도시 | 等 자동송금이 중단 | 간될 수 | 있습니다. |
| 청구세부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청구유형 | | 정액 🗆 실선 | 뇬 □ 동시 | 시(정액+실손 | 발생원 | 인 🗆 질 | 병 □ 재해 | □ 기타(|) 의 | 료수급권자 |] 예 🗆 | 아니오 |
| 청구사유 (중복선택가능) | | 사망 🗆 경 | 당해 🗆 | 진단 🗆 | 수술 🗆 | 입원 🗆 | 통원(외래/처 | 방) 🗆 골걸 | ₫ 🗆 | 기타(| |) |
| 사고내용 (상세하게 작성) | | 일시 : 자동차보험/~ | 년 산재보험치 | 월 : : 리여부 : c | 일 | 시 아니오 | 사고?사고? | | | | | |
| 타사가입여부 | - | <u> </u> | _ ,,— | | | <u></u> 가입건수 : | | | 쿠(단체수 | 실손포함): ㅁ 예 | | 아니오】 |
| 실손통원 의료비 청구시 (상세하게 작성) | * 통원(외래의료비/처방조제비) 청구시 병명이 2개 이상이면, 영수증 상단에 각각 병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 * 단, 추가적 심사필요 판단시 병명증빙서류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보험금 접수시 필수 확인사항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·변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,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. 보험사기(허위입원, 고의사고, 사고조작, 피해과장 등)는 범죄이며,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제 3 항, 제 4 항 등 법령에 따라 담당자(연락처)를 안내받고, 예상심사기간과 지급절차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듣고, 점부 개인(신용)정보처리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합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① 청구하신 보험금은 보 보험금을 지급하여 5 ② 보험금 지급심사 등 ★는 「특정 금융거래정5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금융 | 보험금 드리며 업무 보의 보 | 남 청구서류를 점 1, 지급 지연시 중 일부는 "삼 보고 및 이용 등 | 접수한 날로 보험업법(성생명서비 등에 관한 ¹ | 부터 3 영업역 에 따라 전화를 스손해사정(3 | 일 이내(단,지급 로 지연되는 人 주)" 등에 위탁하 | h유를 설명히 하여 처리할 | 고 보험금 지급 수 있습니다. | 급시 지연이자 를 | 더하여 | 지급합니다. | l되며 | 화인 <u>확인</u> |
| ※ 단체계약자 | 청구, | | | 래 | | - 익자 (대리 | 년 월 영구시 대리인) 트 [성명 : | _ | |] | 서: | 명(인) |

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(보험금 청구用) [1/2]



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- ※ 이래 동의 사항을 읽고 동의하는 경우 각 동의함에 체크(☑)하여 주시고.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(후견인)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「피보험자」란 한 쪽에만 동의 체크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.

개인(신용)정보 등의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

「개인정보보호법」및 「사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 · 이용 하고자 합니다.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■ 개인(신용)정보 등의 수집 · 이용 목적

보험금 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 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, 보험계약유지·관리 | 보험금지급관련 분쟁대응 및 고객이력관리, 민원처리 및 소비자 보호, 증빙서류보존, 이체(자동,R/T이체 포함) 및 입출금 업무

■ 수집 · 이용하는 자

당사(삼성생명) | 당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·심사, 사고조사, 보험계약유지 ·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(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(주), 전산회사, 삼성생명 컨설턴트 · 보험대리점, 고객인내 발송대행업체 등)

■ 수집 · 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【보험금 청구를 전후로 하여 당사 등이 수집 · 이용하는 다음의 개인(신용)정보等】

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), 계좌정보, 당사 및 타보험사체신관서 (우체국보험, 공제사업자 포함)]의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정보(사고정보 포함) |

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(신용)정보(경찰, 공공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

■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 · 이용기간

수집 · 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조사, 보험사기방지·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이용하며, 별도보관)

※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의모든 거래관계가 계약의 만료, 해지•해제•취소, 소멸시효의 완성,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,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. 세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. [이래 **[2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**, 및 **[3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**,] 에서의 거래종료일도 동일

개인(신용)정보 수집 이용 동의여부

피보험자

동의함 🗌

수익자

동의함 🗌

02

개인(신용)정보 등의 조회에 관한 사항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정보 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사출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개인(사용)정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. **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**

■ 개인(신용)정보 등의 조회목적

보험금지급 · 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 시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

■ 조회하는 자

당사(삼성생명) | 당사로부터 보험금지금 · 심사 및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재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(주)) 등

■ 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보험계약정보,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(시고정보 포함).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

■ 조회 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의 보유 · 이용기간

수집 · 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괴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 · 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· 이용하며, 별도 보관)

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여부

피보험자

동의함 🗌

수익자

동의함 🗌





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(보험금 청구用) [2/2]



03

개인(신용)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「개인정보보호법」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업무수탁자가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이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■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

신용정보집중기관

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보험요율산출기관, 경찰, 검찰, 법원 등 국가기관

보험회사 등: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사, 국내 · 국외 재보험사, 공제 시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, 당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· 심사, 사고조사, 보험계약의 유지 ·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(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(주), 전산회사, 삼성생명 컨설턴트 · 보험대리점, 고객안내 발송 대행업체 등), 이체(자동, R/T 이체 포함) 및 입출금 업무 관련 기관(계좌 개설 금융기관, 금융 결제원, 당사의 이체의뢰 은행)

의료기관 등 :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, 의사, 변호사 등

■ 제공받는 자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 · 이용 기간

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)

■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신용정보집중기관: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

공공기관 등: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

보험회사 등 :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, 보험금청구서류

접수대행 서비스, 보험계약 유지 · 관리 업무 및 입출금 등 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 · 수납, 이체 등) 관련 기관, 고객안내자료 제작 및 발송관련업무

의료기관 등 : 의료심사 및 자문, 소견서, 진료기록 열람,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업무 등

■ 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【보험금 청구를 전후로 하여 당사 등이 수집 · 이용하는 다음의 개인(신용)정보 等】 개인(신용)정보 등의 '수집 · 이용'에 관한 동의 항목과 동일

※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[http://www.samsunglife.com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|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여부 | 피보험자 | 동의함 🗆 | 수익자 | 동의함 🗆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|
| | | | | |

0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업무수탁자가 상기 개인(신용)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민감정보(질병·상해정보) 및 고유식별정보 (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·운전면허증번호)를 처리 (수집·이용, 조회, 제공 등)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| 질병(상해)정보 제공 동의여부 | 피보험자 | 동의함 🗆 | 수익자 | 동의함 🗆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|-------|
|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여부 | 피보험자 | 동의함 🗆 | 수익자 | 동의함 🗆 |

※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다수일 경우(다수의 수익자 및 다수의 상속인 등)이래 수익자 서명란에 전원 성명 기재 부탁드립니다.

| 피보험자 | 친권자 | (부) | (모) |
|------|-----|-----|-----|
| 수익자 | 후견인 | | |

신청일: 20 년 월 일

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_{귀중}

보험금 지급절차 정보 안내 (고객보관用)



보험금 심사절차 안내



- ※ 보험사는 [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]에 따라 보험사고조사업무 등을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질병정보 등에 대한 수집·조사·조회 및 제공·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※ 심사전문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㈜는 보험사고조사를 수행하는 회사로서, 삼성생명에 고객님께서 청구하신 보험금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며, 현지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담당자가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.
- ※ 삼성생명이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생명이 부담합니다. 계약자 또한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선임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.
- ※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,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보험금 지급지연 및 부지급 결정에 대한 안내

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사실을 고객님이 요청하신 방법에 따라 통보하게 되며, 약관에 정한 바와 같이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,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발생시 그 근거를 명시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.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사 담당자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(☎1577-4118) 등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보험금 가지급제도

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사를 위해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어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, 청구 보험금 중 조사나 확인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. ※ 가지급 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% 이내로 산정됩니다.

의료심사

장해, 진단급부 등 청구시 의료재심사 또는 제 3 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, 이 경우 비용은 삼성생명이 부담합니다.

보험사간 비례보상

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타사의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타사의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금 청구접수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

※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·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

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회사의 손해배상책임

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.

보험금 청구권의 소멸

보험금 청구권, 보험료 반환청구권,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 (상법 662조)

심사 진행상황 안내

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(http://www.samsunglife.com)를 통해 청구하신 보험금 지급심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- ※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(☎1577-4118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심사 지급기일은 3일 또는 10일 以內이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※ 언제나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,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워합니다.
 -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- 문의사항 안내를 위한 접수담당자 명함 부착란입니다.
- 접수담당자 연락처가 필요시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 (☎1577-4118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

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



※ 병원발급서류는 병명, 병원직인, 환자인적사항 및 청구사유별 치료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서류는 원본기준

※ FAX, 사본 접수 가능대상(사망/장해/진단 제외) -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- 진료비계산서상 본인부담총액 100 만원이하 - 내방인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) 공통서류 - 통장사본(단, 수익자 본인 내방 또는 수익자 본인 계좌송금 시 제외) ※ 배우자, 자녀 보장상품은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필요 ※ 법인·단체수익자의 경우는 수익자·실제소유자 확인서 必첨부 ** 지금세탁방지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추가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) 후유장해 입/통원 재 해 가족관계 사 망 진단서 구 분 기 타 진단서 진단서 확인서 입증서류 등록부 관공서 - 재해입증이 가능한 관공서 서류로 대체가능(교통사고사실확인 등) 발 급 처 해당 의료기관 * 민원24참고 ※ 민원 24(www.minwon.go.kr) 등에서 발급 가능 -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 일반사망 (상기서류는 사망진단서 원본 제출 시 생략가능) ·사망수익자 미지정시 상속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사망 舊(구) 제적등본 ·사망자가 기혼여성인 경우, 이혼/재혼했을 시 前(전)호주 제적등본 재해사망 ·수익자가미성년자시 미성년자기준의기본증명서(상세),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- 팔·다리관절: AMA 방식의 운동각도(정상운동각도 포함)기재 - 척추장해 · '05.4.1일 이전 AMA 방식의 운동각도(정상운동각도포함)기재 일반장해 ·'05.4.1일 이후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 기재 ·단, '99.2.1일 이후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해 진단서 제출 장해 - (일반)진단서 대체가능 ·만성신부전, 혈액투석(최초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) 재해장해 사지절단(절단부위명시) ·인공관절치환(치환일자, 부위 기재) ·신장, 비장 적출 시(적출일자, 부위 기재) -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(진단명, 일자 기재) 입원 • - 재해입원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필요 - 재해입증서류(사고내용이 기재된 진료차트 등) 재해수술 -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(진단명, 수술명, 일자, 방법 등 기재) 수술 - 신수술보장특약N: 진료비계산서, 급여수가코드 (EDI포함) 명시된 종수술 진료비세부내역서 (회사양식의 급여수가코드(EDI 코드 포함) 확인서로 대체 가능) - 골절 확진에 한함(의증 제외) 곡적 • - 진단서(or 소견서) 또는 입퇴원(통원)확인서(진단명, 일자 등 기재) - 진단서(or 소견서 및 진료차트) 또는 통원확인서(진단명, 일자 등 기재) 통원 - 정액통원(암/재해/특정상병)은 FAX 접수, 복사본 가능 - 재해통원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필요 - 교통사고사실 확인원(경찰서, 자동차보험사) 교통재해 치료 - 사고내용이 기재된 진료차트 등 상해치료 - 진단서 또는 입퇴원(통원)확인서(진단명, 일자 등 기재) 암 진단 확진이 가능한 조직검사결과지 ※ 백혈병 - 골수검사지, 간/폐/췌장암- 방사선 판독결과지(조직검사를 못할 경우) 대체가능 - Stage CI 진단서: 회사양식의 암 병기 확인서(별첨) or 암 병기 명시된 서류(진단서/소견서) 진단 *표기 방식 : 종합병기/개별 T,N,M(例: 4 기/T3N2M1) 단, TNM 병기 분류 불가時 대체병기 기재 뇌졸중 - CT,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심근경색 - 각종 검사결과지(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, 심전도결과지, 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) - 기본 제출서류는 국내와 동일함 - 환자의 인적사항, 진단명,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,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진단서만 인정 해외병원 ※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(또는 중문, 일문)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실손의료비 보상

| 구 분 | | 진단서 (병명확인서류) | 진료비 세부내역서 |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|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| 기 타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발급처 | | | 해당 | 의료기관 | | - 실손보험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불가 |
| 실손입원 | | • | • | • | | - 청구금액 50 만원 이하 시 병명 있는 입퇴원확인서로 진단서 대체 가능 |
| 실손 통원 | 외래의료 | • | • | • | | - 실손통원(외래,처방)의 경우 FAX 접수, 복사본 가능 - 본인부담금: 외래, 처방 합산/ 동일상병 기준 - 본인부담금 10万 이하: 보험금청구서에 병명만 기재(진단서 대체) |
| | 처방조제 | • | | | • | 본인부담금 10万 초과: 병명확인서류(통원일자 및 병명 포함) 제출 (단, 응급의학과, 치과, 한방과 진료 청구 건 제외) - 다수 건일 경우 일자별/진료과별 구분하여 제출 필요 - 선택진료비 외 비급여합계금액 5万 이상: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 |

- ※ 17년 4월 1일 이후 개정실손 : 진료비세부내역서 必구비 (개정실손이 포함된 중복계약 포함)
- ※ 진단서外 대체 가능한 서류는 기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청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홈페이지(http://www.samsunglife.com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, 재해입증 서류 등 문의사항은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(☎1577-4118)를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사가 신속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


